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I . 목적

제1조 (목적)

이 실천사항은 (주)유진테크(이하 “당사”)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』에서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하도급법” 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 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제2조 (기본원칙)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.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.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3조 (내부 심의위원회 구성)

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 내부에 하도급거래 관련 업무 담당 팀장(급)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관부서장 중에서 임명하여 선정한다. 단, 위원 중 일부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하여 선정할 수 있다.

제4조 (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)

-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 사업자별

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 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41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, 가격 결정 등에 대한 공정성/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>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-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<하도급법 관련 사후 심의사항>

- ① 하도급법 위반여부
- ② 대금지급 위반여부

제5조 (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기타사항)

-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한다.
-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③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④ 내부 심의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유관부서에 권고·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"안건 없음"으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할 수 있다.

제6조 (사후 관리)

-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오프라인 회의록(온라인 회의록 포함)을 회의 종료 후 7일

이내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.

- ②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이 규정은 2025년 1월부터 제정 시행한다.